WORLDVIEW Culture & Worldview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? _ 이상원

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?



이상원(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)

총신대학교 신학과(B.A.)와 신학대학원(M.Div.)을 졸업한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(Th.M.)와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교(Th.D.)를 졸업했다. 미국 보스톤 대학교와 네덜란 드 우트레히트대학교에서도 공부했다.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/조직신 학 교수로 있으며,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으로 섬 기고 있다

> 본권의 확대는 국가와 인종과 성별과 빈부의 차이 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 것을 촉 구하는 기독교 윤리와 부합하는가? 또한 이 시도는 법에 대한 성경의 이해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가?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기독교적 규범과 법 이해 는 헌법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.

모세의 율법 - 도덕법, 의식법, 시민법

성경은 헌법의 위치와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가? 성경의 법사상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계시되 었다.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세 가 지 유형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다. 세가지 유형의 법체계는 도덕법, 의식법, 시민법

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헌법 개 정안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절차적 과정의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가인권기본계획(National Action Plan)에서 재차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 터 사람으로 변경하였다. 현 정부는 이처럼 기본권 의 주체를 확대한 이유를 국제사회의 기대와 외국 인 200만명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. 문재인 정부의 기본 권의 범위 확대 시도는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 계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불만과 더 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, 그리 고 외국인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비판 과 저항을 받고 있다. 그러면 이와 같은 헌법상 기 76

을가리킨다. 물론 모세의 율법 안에는 이세 가지 법 체계가 분류 되지 않은 채 섞여 있다. 그런데 모세 시 대에는 이 법체계들을 구태여 산뜻하게 분류할 필 요가 없었다. 모세의 율법을 모두 합해도 분량이 얼 마 되지 않아서 분류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 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정치 지도자, 경제 지도자,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'원시 사회'였기 때문이다. 그러나 종교, 정치, 경제, 문화 등의 영역으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서 모세의 율법의 현대적 적용을 말할 때는 각각의 영역에 상응하는 율법의 항목들을 모은 다음, 각 영 역별로 분류하고,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해석과 적 용을 말해야 한다. 모세의 율법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, 이 세 가지 법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표준적인 분류법이다.

도덕법은사랑의 대강령(구약: 레19:18; 신6:5, 신 약:마 22:37-40), 황금률(구약: 출23:9,신10:19, 신 약: 마7:12), 십계명, 동성애를 포함한 성 윤리와 관 련된 규례들(레18장), 산상수훈(마5-7장)을 가리 키는 법체계로서,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시 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해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체계다.

의식법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의식을 규 정한 법체계다. 절기, 제사,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 식, 질병, 성막, 제사장의 의복 등을 규정한 항목들이 의식법으로 분류된다. 구약시대의 종교적 의식들은 모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서 이루실 구속사건을 예표 하는 법체계로서, 실체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자구적으로 적 용될 필요가 없다.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이 신약시 대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. 의식법 그 자체를 자구 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의식법이 상징하는 의 미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건은 오늘날도 모두 유효하다. 이런 의미에서 모세 의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들 가운데 신약시대에 버 릴 것이 하나도 없다.

시민법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.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정 치 및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신 법체계 로서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한다. 시민법은 도덕법 을 범함으로써 이웃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들 과, 행정조직에 관한 규례들 곧 70인 장로회, 백성들 을 10명, 50명, 100명 등의 단위로 나누고 부장을 세 워 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라는 규례들을 가 리키는 정치적인 규례들과, 희년 제도, 안식년 제도, 토지 제도, 이자 제도 등을 규정한 경제적인 규례 들로 구성된다. 시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특 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특정 한 백성들 특히, 백성들 전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신 정적 공동체의 경영을 위하여 주신 실정법 체계이 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성 격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이다. 그렇다고 해서 시민법이 신약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. 시민법 그 자체 는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으나 시민법의 배 경에 깔려 있는 법의 정신이자 법철학인 정의의 원 리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정치유리의 보편적 규범 이된다

믿음과 윤리의 영역 그리고 법의 영역

이와 같은 성경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이 우리에

게 보여주는 바는 시민법에 속하는 헌법은 이 세상 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규범 체계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살 아가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, 시대가 바뀌고, 지정학적인 위치 가 바뀌고 구성원들이 바뀌면 새로운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는 법체계라는 것이다. 다 시 말해서 헌법은 보편적인 개념인 '사람'을 위하여 제정된 법체계가 아니라 '국민'을 위하여 제정된 법 체계다.

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헤르만 도예베르트(Herman Dooyeweerd)는 그의 『이론 적 사유의 신비평』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에서 법의 양상, 윤리의 양상, 믿음의 양상 을 구별하고 법의 양상 위에 윤리의 양상을 두고, 윤 리의 양상 위에 믿음의 양상을 두었다. 이런 구도 의 의미는 법의 양상은 믿음과 윤리의 양상의 지도 하에 있어야 하며, 또한 믿음이나 윤리에 비교해 볼 때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.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'도덕법'을 두셨음을 말함으 로써(롬2:14,15) 윤리의 양상은 보편적인 '사람'에 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. 또한 성경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"하나님을 알만 한 것"을 두 시고 모든 자연만물 안에 "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"을 분명히 두셨다 (롬1:19-20)고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의 양상 곧 종 교의 양상이 보편적인 '사람'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함을 시사하셨다. 그러나 성경은 시민법이 보편 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시사를 한 일이 없다. 법 은 외형적인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작동한다. 윤리 는 외형적 사회구조를 지도적으로 포괄하면서 마음 과 양심의 차원에서 작동한다. 믿음은 외형적 사회



77

78

믿음, 곧 종교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무시무시한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대신한다. '사람'을 '법'에 가두려고 한 시도의 비극적인 결과다.

구조와 마음과 양심을 모두 포괄하면서 영혼의 깊 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영역에서 작동한 다. 믿음의 양상보다 윤리의 양상이 더 폭이 좁고 경 직되기 마련이며, 더욱이 법의 영역은 믿음과 윤리 의 영역들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폭이 협소하고 경 직이 심하다. 따라서 믿음의 영역이나 윤리의 영역 에 속한 사안들을 법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때는 매 우 위험한 경직화가 뒤따른다. 이것이 특정국가의 헌법이 보편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.

법의 틀에 윤리와 종교를 담으려는 시도의 결말

모든 국가는 법의 양상 안에서 작동하는 기관이 다. 법 – 여기에는 헌법이 핵심으로 포함 된다 – 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은 곧 국가다. 국가 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. 국가가 이처럼 국민을 위하여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'사람'을 위한 기관으 로 변역시키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이다. 공산주의 국가들은 '사람'이라는 개념 에 해당하는 '인민'을 위한 국가를 지향했다. 이 말 의 의미는 법을 윤리와 믿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법으로 윤리와 믿음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뜻이다. 공산주의 국가들은 법이라는 좁고 경직된 차원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힘으로 법 보 다 훨씬 넓고 탄력이 있는 마음, 양심,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윤리와 믿음의 문제를 처리하려 고 했다. 그 결과는 처참했다. 법의 틀로 윤리와 종 교를 담으려고 하니 윤리와 종교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. 구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남은 러시아는 국민 들의 윤리 문제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발언하는 사 람이 없는 윤리적 진공상태에 빠져 있다. 구소련 시 대의 후유증이다. 믿음, 곧 종교가 무너지면 그 자 리를 무시무시한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대신한다. '사람'을 '법'에 가두려고 한 시도의 비극적인 결과 다.지금우리사회에 바로이사태가 진행되고 있다. 헌법을 '국민'을 위한 법이 아닌, '사람'을 위한 법으 로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. 보편적인 '사람'의 문제 를 특정한 지역의, 특정한 시대의, 특정한 구성원을 고유한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부당하게 그 영 역을 확대하여 전 세계 시민들을 포괄하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인 동시에 국가 해체주의적 발상이 기도 하다.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인 동성애의 문제를 법, 그것도 헌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도 이런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. 보편적인 사 람의 문제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'윤리'와 '믿음'의 기관들 곧, 보편적인 사람의 문제를 다루 는 민간 기관들이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고 국가는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. 🚺